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구제절차 등의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등〉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2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피해구제절차 등의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등	2
2.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6조, 제68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피해구제절차 등의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등

☐ 개정안은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외 처리기간을 각각 30일에서 60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장(피해구제절차)은 그 사유 및 기한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원장(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처리기간 등) ① ----- ----- ----- ----60일----- ----- ----- ----- ----- ----- ----- -----
<신설>	<단서 삭제>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6조(분쟁조정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u>30일</u>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분쟁조정기간 등) ① ---- ----- ----- ----- -----<u>60일</u>----- -----. ② ----- ----- -----<u>60일</u>----- ----- -----. ----- ----- -----.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법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절차(제55조 및 제58조)¹⁾ 및 분쟁조정(제65조 및 제66조)²⁾ 제도를 규정하

- 1)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소비자기본법」 제65조(분쟁조정)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분쟁조정 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고 있는데, 처리기간을 각각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

구분		피해구제절차	분쟁조정
근거조항		제55조 및 제57조	제65조 및 66조
처리기관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
신청		소비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	피해구제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 한국소비자원
처리기간		3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시	기간	60일 이내	- (「분쟁조정사무 수행지침」 제2조 ³⁾ 최대 2회, 1회 90일 이내)
	사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 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주체	-	조정위원회
	통지대상	-	당사자 및 그 대리인
	통지내용	-	연장 사유와 기한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분쟁조정사무 수행지침」 제2조(처리기간 등) ②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이 최대 2회, 1회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 그러나 처리기간 연장 시, 피해구제절차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 등에게 연장 사유, 기한 및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없이, 분쟁조정인 경우 당사자 등에게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인 처리기간을 각각 30일에서 60일로 하고, 그 처리 기간 연장시 원장(피해구제절차) 및 조정위원회는 사유, 기한을 신청인 또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당사자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시 원장(피해구제절차) 및 조정위원회(분쟁조정)가 연장 사유, 기한, 진행상황을 신청인 또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 사건 당사자의 알권리 보호 및 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인 처리기간을 각각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할 경우,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에 있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특 하야 하고,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분쟁조정사건 처리를 마쳐야 한다.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실제 피해구제절차의 평균 처리기간(2024년 기준 19.9일)⁵⁾보다 길고,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2024년 기준 91.5일)⁶⁾보다 짧아 현실적인 제도운영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분쟁조정 경우 신청건수가 최근 5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⁷⁾하였고, 현행법 상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무조건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⁸⁾ 구성상의 어려움 등으로 조정절차가 지연되고

5) <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처리 현황 >

(단위: 건, %, 일)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43,417	42,844	45,507	47,997	57,177
처리(A)	43,417	42,844	45,507	47,997	57,177
합의(B)	21,745	21,586	22,798	24,904	30,261
미합의**	21,672	21,258	22,709	23,093	26,916
합의율(B/A)	50.1	50.4	50.1	51.9	52.9
평균 처리기간	15.8	15.5	15.2	17.2	19.9
처리기간(60일) 초과사건	574	688	449	477	1,705

* 처리결과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시정, 수리·보수, 환급으로 종결된 건

** 처리결과 상담기타, 처리불능, 조정신청, 취하·중지,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건

자료: 한국소비자원

6) <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처리 현황 >

(단위 : 건, %, 일)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건수	5,265	4,803	4,118	6,390	9,731
처리건수	4,407	4,229	5,065	5,180	6,969
성립률*	72.4	67.9	70.5	67.6	70.5
평균 처리기간	80.0	108.7	111.9	84.4	91.5
처리기간(60일) 초과사건	3,777	3,537	2,529	4,154	6,362

* 산식 : (조정전합의 + 성립) / (조정전합의 + 성립 + 불성립)

자료: 한국소비자원

7) <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처리 현황 > 표 참조, 2020년 5,265건 → 2024년 9,731건

8) < 분쟁조정위원회 구분 >

회의구분	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	조정부
주요 관장사항	- 합의권고 금액 200만원 이상 분쟁 사건 -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	- 합의권고 금액 200만원 미만 분쟁 사건 - 분쟁조정회의에서 관장하지 않는 분쟁 사건
회의 구성	위원장+상임위원+5~9명 (총 7~11명)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2~4명 (총 3~5명)
의결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단, 소비자, 사업자 대표 각 1명 이상)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리기간 연장보다는 단독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구제의 경우 현행법상의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분쟁조정은 개정안의 60일도 초과한다는 점에서 처리기간의 연장은 큰 실익이 없으며, 처리기간 연장 시 진행상황 통지 등 일반행정의 범위까지 법률로 규정 시 민원 업무 현장의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소비자기본법」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의 내용이 물품의 교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고의 내용이 수리인 경우에는 물품의 수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으로 본다.

9) 분쟁조정절차의 적체 해소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 또는 간이조정절차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221호(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 제2210213호(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2.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 소가 제기되어 그 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 소가 제기되어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대상의 기준, 소송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소송지원 운영지침」¹⁰⁾에 따라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피해구제절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절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송대리의 방법 또는 소장 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신청대상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피해자, 소송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 피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10)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지원의 범위) 한국소비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

제3조(지원방법) 원장은 제2조에 따른 소송지원시 제11조의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변호인단”이라 한다)을 통한 소송대리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난이도,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수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장 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대상 및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제2조에 따른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의 당사자인 소비자
2. 소송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으로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소비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자
 -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건(사회적 배려계층 및 소액사건)은 481건의 신청을 받아 139건의 소송대리 및 303건의 소장작성을 통해 총 442건을 지원하였고, 집단 사건(다수 피해자)은 2022년도에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환급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결정 불성립에 관련한 소송지원을 하였으며, 2025년 3월에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여행·항공·숙박 상품의 결제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불성립과 관련한 소송지원을 한 바 있음.

<일반사건(사회적 배려계층 및 소액사건) 소송지원 현황>

(단위: 건)

연도	신청 건수	지원 건수	지원 방식		부(不) 지원 건수*
			소송대리	소장작성	
2020	65	43	16	27	22
2021	62	56	26	30	6
2022	78	76	43	33	2
2023	130	127	33	94	3
2024	146	140	21	119	6
합 계	481	442	139	303	39

* 소송지원 여부는 소송지원의 타당성 및 승소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부지원 사유에 대해 세분하여 분류하기 어려움.

자료: 한국소비자원

<집단사건(다수 피해자) 소송지원 현황>

(단위: 건)

연도	신청 건수	지원 건수	비고
2022	1 (신청인: 2,907명)	1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환급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지원
2025.3.	1 (신청인: 3,954명)	1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여행·항공·숙박 상품의 결제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지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 ☐ 이에 대해, 개정안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 다만, 개정안은 소송지원 방법에 소송대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지원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소장 작성 대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개정안은 소송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나, 소송지원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소장 작성 대행도 소송지원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지원 업

무의 세부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수정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5